

광주지방법원 2024. 1. 30 자 2022라5294 결정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 30 자 2022라5294 결정

광주지방법원 2022. 6. 15 자 2022자5152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A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2. 6. 15.자 2022자5152 결정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2021. 8. 6. 광주시 서구 B빌딩 4층 유흥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1심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민사상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유휴주점과 같은 위락시설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영업의 성패에 따라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있는 등 장래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제소전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소전화해의 대상이 되는 '민사상 다툼'이란 제소전화해의 성질 및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다투는 사정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권리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한 직접적인 분쟁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가 의사가 근접한 경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장래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사자 쌍방이 자유로운 협의를 거쳐 장차 문제될 자신들의 법률관계를 자주적으로 형성한 다음 그것에 일정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당사자들이 형성한 권리관계의 내용이 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제도적 의의에 부합한다.

이 사건 신청은 제소전화해의 신청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데도, 제1심법원은 화해기일을 통해 그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였다.

4.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30.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장유나 판사 김동희